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5.13.(수) 조간	배포	2026.5.12.(화)
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	책임자	국 장	이권홍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박원규	(02-3145-7474)
	보험검사1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곽정민	(02-3145-7790)
		담당자	팀 장	박수홍	(02-3145-7770)
	보험검사2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정영락	(02-3145-7680)
		담당자	팀 장	이동재	(02-3145-7510)
	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손인수	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	김현중	(02-3145-7260)

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- 소비자경보「주의」발령

▣ 소비자경보 2026 - 14호			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소비자경보 내용

◈ 최근 '1,200%룰*'의 GA 확대 적용('26.7월)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

*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

○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* 우려

*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,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(소위 '보험 갈아타기')

⇨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

소비자 유의사항

1. 승환시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.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3.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.
4.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.

Ⅰ 발령 배경

□ 금융당국은 **보험 판매채널**의 **과도한 사업비 집행 관행**을 **개선**하기 위해 보험 **판매수수료 개편안**을 **확정**('26.1.14.)하고, **'26.7월부터 '1,200%룰'**을 **GA까지 확대 적용**할 **예정**입니다.

○ 이에 **제도 시행**을 앞두고 최근 일부 영업조직에서 **보험설계사 유치**를 위한 **정착지원금 경쟁**이 **과열***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* '보험설계사 몸값 경쟁…환승 고객은 보장 빈손'('26.3.9., 서울신문)
'1,200%룰 적용 앞두고…몸집 키우는 초대형 GA'('26.5.1., 한국경제)

※ 1,200%룰 GA 확대 시행 시 1차 연도에 지급 가능한 수수료가 제한되어, GA가 지급 가능한 정착지원금(판매수수료에 해당) 규모가 감소

□ 이 과정에서 **이직한 보험설계사**는 **정착지원금 수령** 후 **약속한 실적**을 **달성**하기 위해 **기존 보험계약**을 해지하고 **새로운 보험계약**으로 **갈아타도록 권유**하는 **부당승환 우려**가 커지고 있습니다.

※ (보험설계사 이직 후 부당승환 유도 과정) ①거액의 정착지원금 수령 후 이직 → ②신계약 목표실적 상향 → ③실적 부담 → ④보험계약 부당승환 등 유도

○ **'26년 1분기**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**부당승환** 관련 **민원**은 **총 211건**으로 직전 분기(137건) 대비 **크게 증가**(**+74건**, **54.0%↑**)하였습니다.

○ 이에 **모집질서 혼란 우려**에 **적극 대응**하고 **소비자 피해**를 **예방**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**부당승환** 관련 **소비자경보**를 발령합니다.

< 부당승환 관련 민원 건수(분기별) **>**

(단위 : 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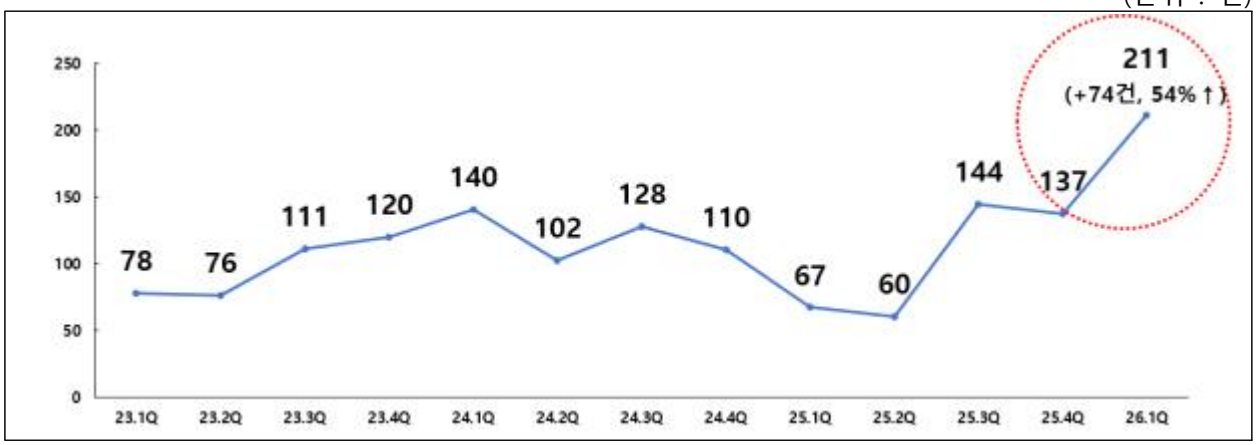

Ⅱ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

1 소비자 유의사항(최근 금감원 민원 접수사례)

◆ 기존 계약을 **중도 해지 시 금전적 손실, 보장 공백, 면책기간 재적용, 보험료 상승** 등 **소비자**에게 **다양한 불이익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1 승환 시 금전적 손실(납입보험료 > 해약환급금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○ A씨는 '보장내용이 좋아졌다'는 **설계사**의 **권유**에 10년 넘게 유지한 **기존 종신보험**을 **해지**하고 **신규 종신보험**에 가입하였습니다.

➡ 기존 보험의 **납입보험료**(2,700만원)보다 **적은 해약환급금**(2,200만원) **수령** 후 **신규 보험**에 **가입**하였으나 **사망보험금**(1억원)은 **변동**이 **없었습니다.**

2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○ B씨는 **고혈압 약**을 **복용 중** 설계사의 권유로 **기존 건강보험**을 **해지**하고 **일부 특약**(로봇 시술)이 **추가**된 **건강보험**으로 갈아탔습니다.

➡ **고혈압 약 투약 이력**으로 **기존 보험**에서 모두 보장되던 **3대 질병**(암, 뇌·심혈관) **중 2대 질병**(뇌·심혈관) **부담보 조건**으로 **가입**되었습니다.

3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.

○ C씨는 **암 진단비**가 **늘어난다**(5천만원→1억원)는 **설계사 권유**에 따라 **암보험 승환** 후 **2개월 만**에 건강검진에서 **위암진단**을 받았습니다.

➡ **기존 암보험**을 유지했다면 **일반암 진단비**(5천만원)를 전액 받을 수 있었으나, **신규 보험**은 '**가입 후 90일 면책기간**' 조항이 있어 **보험금**을 **전혀 받지 못했습니다.**

4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.

○ D씨는 **30세**에 가입했던 **암보험**을 **유지**하고 있었으나, 설계사의 권유로 **기존 보험**을 **해지**하고 신규로 **암보험**에 **가입**하였습니다.

➡ **보험연령 증가**(45세)로 **보험료**는 **크게 상승**(2.1만원 → 6.1만원)하였으나 **주요 보장 내용**(주요암 진단비 5천만원 등)은 **큰 변동**이 **없었습니다.**

2 소비자 대응 요령

1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.

○ 신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**비교안내 확인서**가 제공되므로, **청약 전**에 **보험기간, 보험료, 보장내용 및 면책사유** 등 신·구계약의 **중요사항**을 **꼼꼼하게 비교**하여야 합니다.

※ 신계약 체결시 **특정질환 부담보** 여부 및 **면책기간** 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.

< 비교안내 확인서 예시(일부 내용 발췌) **>**

비교항목	신규 계약	기존 계약1	기존 계약2
보험회사명/상품명	OO손해보험(A보험)	△△손해보험(B보험)	□□손해보험(C보험)
보험료	53,000원	38,000원	47,000원
보험목적	상해	상해	상해
보험기간	'26.6.1.~'61.6.1.	'23.3.1.~'61.3.1.	'21.8.1.~'61.8.1.
보험료 납입주기/납입기간	월납/10년	월납/10년	월납/10년
보험가입금액/보험금액/보장내용	상해사망/8천만원/질병 등	상해사망/7천만원/질병 등	상해사망/1억원/질병 등
해약환급률(기준일자)	-	67.3%('26.5월 기준)	84.3%('26.5월 기준)
예정이율(기준일자)	3.1%('26.5월 기준)	3.6%('26.5월 기준)	3.9%('26.5월 기준)
면책사유	암담보(계약일 90일 內)	-	고의사고

2 보험가입시 제공받은 설명자료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.

○ **보험**을 **갈아타신** 경우에는 향후 **분쟁**에 대비하여 **상품설명서, 보험약관, 비교안내 확인서, 문자·메신저** 등 **권유 내용**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3 특약 추가 또는 단독형 상품 추가 가입 등을 고려하세요.

○ 기존 보험의 **보장 범위**가 좁아서 **고민**이라면,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**부족한 부분**만 기존 계약에 **특약**으로 추가하거나 **해당 보장**만을 담보하는 **단독형 상품**에 **추가**로 **가입***하는 것이 **유리**합니다.

* (예) 기존 건강보험의 암진단비 보장이 부족하다면, 암진단비 단독상품 추가 가입

4 설계사의 "해지 후 재가입 권유"를 의심하세요.

○ 설계사가 충분한 상품 설명 보다는 **무조건적**인 **해지**를 유도하는 경우 **본인**의 **실적** 또는 **수수료**를 위한 것일 **확률**이 높습니다.

【참고】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구제방법

① **부당승환**에 **해당**되는 경우 **기존보험계약 소멸일**로부터 **6개월 이내**에는 **기존보험계약**의 **부활 청구** 및 **새로운 보험계약**의 **취소**가 가능합니다.*(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4항)

*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

② **부당승환**으로 **판단**됨에도 불구하고 **①번**에 따른 **보험회사**의 **조치**가 **미흡**한 경우 **금융감독원**에 **민원**(피해구제 요청) 제기가 가능합니다.

Ⅲ 향후 감독방안

1 부당승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

◆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**보장내용**, **환급조건** 등을 **충분히 비교·확인**할 수 있도록 **비교안내 확인 제도**를 **지속 개선**하고, 관련 **공시**를 **확대**하여 **부당승환 예방 기능**을 **강화**할 계획입니다.

□ **(비교안내 확인서 개선)** 부당승환 방지 등을 위해 ①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**해약환급률**로 **변경**하고, ②**적용이율 비교 대상**도 **확대***하였습니다. ('26.4.21.「보험업법시행령」 개정)

* 新·舊계약간 공시이율 이외에 예정이율도 비교

① **소비자**는 **해약환급률**을 통해 납입보험료 대비 **실제 환급 수준**을 보다 **직관적**으로 **비교·이해**할 수 있게 되었고,

② 기존 **공시이율**(금리연동형)뿐 아니라 **예정이율**(금리확정형)까지 **비교 항목**이 **확대**되어 소비자는 **금리확정형 상품**까지 **적용이율**을 **비교**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 개정 前 >

비교항목	신규계약	기존계약1	기존계약2
상품명	A종신보험	B종신보험	C종신보험
해약환급금	-	480만원	320만원
공시이율	-	-	-

⇨

< 개정 後 >

비교항목	신규계약	기존계약1	기존계약2
상품명	A종신보험	B종신보험	C종신보험
해약환급률	-	67.8%	82.3%
예정이율	3.80%	4.30%	4.10%

□ **(승환계약 공시 강화)** **'26.하반기**에는 「**보험업감독규정**」 개정을 통해 '**승환계약률**'에 대한 **비교공시**를 **실시**할 예정입니다.

○ 향후 **보험회사별·채널별·상품별*** **승환계약률**을 **확인**할 수 있게 되어 **모집행태**에 대한 **시장 감시 기능**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생보 11개(종신·정기·질병·상해·암 등), 손보 12개(질병·상해·암·간병·어린이 등)

【참고】 승환계약률 공시 양식(案)

구분			설계사	개인 대리점	법인 대리점				직영			중개사	기타
					금융기관 보험대리점	TM	홈쇼핑	기타	임직원	복합	다이렉트		
회사별	상품별	승환계약률	0.0%										
		승환계약건수	0건										
		신계약건수	0건										

2 부당 승환 계약에 대한 검사·제재 강화

◆ 금융당국은 과도한 **정착지원금** 및 **승환계약** 관련 **상시감시**를 **강화**하는 한편, **소비자 피해**를 유발하는 **부당승환**에 대하여 **설계사 개인 제재**를 비롯해 **관리책임**에 따른 **기관제재**를 통하여 **엄중히 대처**할 예정입니다.

□ **(상시감시 지속 강화)** 현재 '**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**'(금융당국, 협회 참여)를 통해 **시장 동향**을 **밀착 모니터링**하고 있으며, **과도한 수수료 경쟁**에 대해서는 **현장 검사** 등을 통해 **적시 대응**하고 있습니다.

○ 앞으로도 **정착지원금 지급 수준**이 **과도**하고 **부당승환 의심계약 건수**가 많은 **보험회사** 또는 **GA**에 대해서는 **신속하게 현장검사**를 **실시**하여 **시장질서**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.

【참고】 부당승환 기준

■ 「**보험업법**」 **제97조 제3항**은 **신계약 체결 전·후 6개월**(또는 1개월) 이내 **소멸**된 **기존 보험계약**이 존재하는 경우, 이를 **부당**하게 **소멸**시킨 것으로 **간주**

- 다만, 해당 **보험계약자·피보험자**에게 **기존보험계약**과 **신계약**의 **중요사항**을 **비교안내**(6개월 이내 소멸계약)하거나, **보험계약자**가 **손실가능성**을 **자필서명** 등으로 **확인**(1개월 이내 소멸계약)한 경우에는 **부당승환**에서 **제외**

□ **(보험회사·GA 책임성 제고)** **최근 5년간**('21~'25년) **금융당국**은 **부당 승환** 관련으로 **20개 보험회사**에 **과징금 76.6억원**, **14개 GA**에 **과태료 8.5억원**을 부과하였습니다.

* 소속 임직원(7명) 및 설계사(249명)에 대한 개인 제재도 병행

○ **향후**에도 개인제재 보다는 **기관제재**를 **강화**하여 **소속 설계사**에 대한 **보험회사** 및 **GA**의 **관리책임**을 **보다 엄중히** 묻는 한편, **의도적 위반행위**에는 **제재 수준**을 **대폭 강화**해 나갈 예정입니다.

< 최근 5년간('21~'25년) 부당 승환계약 관련 제재사례 >

구분	기관 제재	임직원 제재	설계사 제재
생보사	· **과징금** 68.6억원	· **퇴직자 위법사실통보**: 1명 · **주의**: 1명	-
손보사	· **과징금** 8.0억원	· **퇴직자 위법사실통보**: 1명 · **주의**: 2명	-
GA	· **과태료** 8.5억원 · **기관경고**, **기관주의**	· **퇴직자 위법사실통보**: 1명 · **주의**: 1명	· **업무정지**(30~60일): 20명 · **과태료**(20~2,700만원): 229명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